

EU

사법재판소,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진을 복제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된다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여행 잡지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공개된 사진을 복제하여 수업 발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공중송신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공개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중송신에 해당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여행 사진작가인 디르크 렌크호프(Dirk Renckhoff)는 스페인의 도시 코르도바(Córdoba)에 있는 로마 다리를 배경으로 한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여행 잡지사에 제공함. 여행 잡지사가 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 독일의 고등학교 학생이 이 사진을 복제하여 스페인 수업시간의 발표 자료에 이용함. 학교는 이 발표 자료를 해당 사진과 함께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함. 게시된 사진 아래에는 여행 잡지사의 홈페이지를 표시하여 이 사진의 출처를 밝히고 있음.
- 사진작가는 여행 잡지사에게만 이 사진의 이용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자신의 공중송신권^{<1>}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 주 정부에 대하여 이 사진이 복제되거나 공중에게 접근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400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1> 이 사건에서 적용된 독일 저작권법의 공중재현권(Recht der öffentlichen Wiedergabe)과 이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공중접근권(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은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의 공중송신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과 공중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과 전송권에 대응하는 개념임. 공중이용제공권을 일본식 표현인 ‘이용가능화권’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making available’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의미가 핵심이고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과 ‘전송권’의 개념규정에 ‘이용 제공’이란 법문언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저작권법의 표현 방식에 따름.

독일의 국내 절차 및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견해

- 1심 법원은 사진작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정부에게 사진의 삭제와 300유로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방해자 책임에 근거해서 원고의 금지청구권(저작권법 제97조 제1항)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함.
- 연방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공중송신에 해당된다는 입장에서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를 선결 판결해 달라고 요청함.^{<2>}
 - 제3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인터넷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송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독일 연방대법원의 견해와는 달리 이 사안에서 공중송신을 부정하는 견해를 밝힘.^{<3>}

사법재판소의 판결

- 사법재판소는 2018년 8월 7일 법무관의 견해와는 달리 타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인터넷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서버에 복제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중에게 접근시킨 경우에는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송신에 해당된다고 판결함.^{<4>}
- 지침 제3조 제1항은 공중송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저작물 이용의 경우-특히 공중송신의 경우-상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이 지침의 주요 목적을 고려하여 공중송신의 개념은 넓게 해석되어야 함.
- 사법재판소의 종전 판례에 따르면 공중송신의 개념은 ‘송신행위’와 ‘공중’송신이란 두 가지 중첩된 구성요건표지로 구성되어 있음.
-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 송신행위는 충족됨. 이 사안에서 제3자의 웹사이트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사진이 자신의 서버로 복제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경우에는 송신행위가 인정됨. 이러한 게시를 통해서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가 이 사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임.

<2> BGH, Beschluss vom 23.02.2017 - I ZR 267/15.

<3> ECJ, Opinion of Advocate General of 25 April 2018, Land Nordrhein-Westfalen v Dirk Renckhoff, Case C-161/17, EU:C:2018:279. (저작권 동향 2018년 제6호 참조).

<4> ECJ, Judgement of 7 August 2018, Land Nordrhein-Westfalen v Dirk Renckhoff, Case C-161/17, EU:C:2018:634.

- ‘공중’의 개념은 잠재적 이용자의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며 상당한 다수로 구성되어야 함. 이 사안에서 송신행위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상당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중’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공중송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한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적어도 하나가 충족되어야 함. 즉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것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송신되거나 저작권자가 최초로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허용했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중’을 대상으로 송신된 경우임. 이 사안에서 최초의 공중송신과 이후의 공중송신은 동일한 기술적 방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새로운 기술적 방법이 아님.
- 하지만 사진이 ‘새로운 공중’에게 송신되었는지에 대해서 본 절차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출됨. 독일의 국내 절차에서 피고인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 주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는 사법재판소의 스벤손 판결^{<5>}을 근거로 새로운 공중을 부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독일 국내 절차에서 원고인 사진작가, 프랑스 정부, EU집행위원회는 이 사안에서 스벤손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공중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새로운 공중이 인정됨.
- 첫째, 지침 제3조 제1항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공중송신을 금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저작물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송신되어 있던 웹사이트에서 제거되거나 권리자가 제3자에게 사전에 부여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이 사안처럼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면 권리자가 송신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어렵게 되어 예방적 권리의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됨.
- 둘째,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송신권은 소진되지 않음.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게시되어 있는 저작물이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경우, 이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공중송신권에 소진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권리자에게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됨.
- 셋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저작물이 게시된 경우,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에 링크를 하는 것은 새로운 공중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법재판소의 스벤손 판결이나 베스트워터 인터내셔널 결정^{<6>}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음.

<5> ECJ, Judgments of 13 February 2014, Svensson and Others, C-466/12, EU:C:2014:76.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신문기사에 대한 단순링크는 공중송신이 아니라는 판결. (저작권 동향 2014년 제4호 참조).

<6> ECJ, Order of 21 October 2014, BestWater International, C-348/13, not published, EU:C:2014:2315. 임베딩 기능을 사용한 프레임링크는 공중송신이 아니라는 결정. (저작권 동향 2014년 제22호 참조).

- 링크는 인터넷에서 정보의 유포를 가능하도록 하여 인터넷의 순기능에 기여하지만, 이 사안과 같이 제3자의 웹사이트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되어 있는 저작물을 관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이러한 순기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음.
 - EU기본권 헌장 제14조의 교육권은 수업시간에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학술연구를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저작물이 학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이 사이트의 모든 방문자에게 접근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저작물에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하는 경우 이 저작물이 삭제되면 이 링크는 이 저작물로 더 이상 연결하지 못하므로 관리자의 예방적 권리가 보장됨.
 - 이 사안에서 이용자가 대상 저작물을 복제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저작자가 최초 송신을 허용했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공중에게 송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송신의 개념은 사진의 다운로드를 방해하는 아무런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고 관리자의 동의로 제삼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를 복제하여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평가 및 전망

- 사법재판소는 그동안 스벤손 판결, 베스트위터 인터내셔널 결정 등에서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 링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중송신을 인정하지 않아 관리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관리자의 동의로 제3자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복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공중송신으로 인정하여 관리자의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하지만 개인 블로그 등에 이 사안처럼 사진이 게시된 경우가 많아 이번 판결로 사진작가들의 변호사를 통한 저작권 침해 경고와 소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파장이 주목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MiZgah>

<https://bit.ly/2Lwaing>

<https://bit.ly/2wgJeDC>

영국

고등법원,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축구 협회가 요청한 6개 ISP에 대한 차단명령의 연장을 승인하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영국 프리미어 리그 협회는 영국 고등법원에게 6개 ISP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지 못하도록 호스팅 서버의 차단을 강제하는 금지명령을 요청하였음. 영국 고등 법원의 Arnold 판사는 7월 18일 영국에 기반을 둔 BT, EE, Plusnet, Sky, TalkTalk, VirginMedia 등의 6개 ISP 업체에 대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가 요청한 차단명령(blocking order)의 연장을 승인함.

⚖️ 영국 고등법원의 차단명령

-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협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Directive 2001/29/EC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영국의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97A조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에게 6개 ISP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지 못하도록 호스팅 서버의 차단을 강제하는 금지명령을 요청하였음.
- 2018년 7월 18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의 Arnold 판사는 Sky, BT, VirginMedia, TalkTalk, Plusnet, EE 등 6개의 업체를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들에게 2018-19 시즌 전체 기간 동안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지 못하도록 호스팅 서버의 차단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림.
- Arnold 판사는 지난 2017년 3월에 이어 2017년 7월에도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영국 프리미어 축구 리그 2017-18 시즌 전 경기에 대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호스팅 서버를 차단하는 명령을 내린바 있음<1>.

⚖️ 기대 및 평가

- 이러한 차단명령(blocking order)은 강력한 개별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일 뿐만 아니라,

<1> 박성진, “[영국] 유료 축구중계방송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IP주소를 포괄적으로 차단하다”, 「저작권 동향」 제2017-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협회에게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호스팅 서버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인터넷 서버에의 접근을 포괄적으로 차단(blanket block)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유의미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2>}.

-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협회는 이번 영국 고등법원의 차단명령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호스팅 서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법원의 움직임은 작년 2017-18 시즌 동안 법원이 약 200,000개에 이르는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대해 차단 조치를 승인했던 전례와 유사한 과정이라는 평가임.
 - 이외에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협회는 지난 2017-18시즌 동안 불법 복제 방지 캠페인(anti-piracy campaign)을 통해 SNS와 디지털 미디어 매체 등에서 약 45만 개에 이르는 프리미어 리그 콘텐츠 관련 불법 비디오 클립 영상 및 동영상을 삭제시킨 바 있음.

뉴캐슬 형사법원의 판단

- 한편 2018년 7월 16일 뉴캐슬 형사법원(Crown Court)은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 영상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트리밍 장치를 공급 하고 이를 통해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 영상을 불법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주요 업체들 중 하나인 Evolution Trading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John Haggerty에게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국의 「사기에 관한 법(Fraud Act)」 등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여 5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 John Haggerty와 그의 아내는 2013년과 2015년 7월 사이에 술집과 그 이용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경로를 우회하여 스트리밍하는 방식을 통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드온(add-on) 프로그램이 추가된 불법 장치(illegal devices)를 8,000개 이상 판매하여 약 75만 파운드(한화 약 11억 원)가 넘는 부당이익을 취하였음.
 - Haggerty는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 장치를 판매한 것을 넘어서서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개의 여권을 소지하고 외국에 가짜 회사(dummy company)를 설립하였음.
 - 또한 그의 아내와 함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무를 맡은 이집트인 회사직원의 출입국을 돕기 위해 이민국(Immigration Service)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였음.

<2> 박성진, “[영국] 유료 축구중개방송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IP주소를 포괄적으로 차단하다”, 「저작권 동향」 제2017-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 Haggerty의 아내 Mary Gilfillan는 징역형에는 처해지지 않았으나 사기로 유죄 판결(convicted)을 받았으며 2년간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를 선고받았음.
- Haggerty는 법원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 영상을 제3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기를 모의(conspiracy)하는 등 「저작권법」과 「사기에 관한 법(Fraud Act)」을 위반하여 유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pleading guilty)하였음.

 **평가 및 전망**

- 영국 저작권 침해 방지 연합(the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이하 ‘FACT’)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뉴캐슬 형사법원(Crown Court)의 판결은 기존의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3>}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를 우회하여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드온(add-on) 프로그램이 추가된 불법 장치(illegal devices)를 이용한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한 영국 법원의 첫 번째 판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함.
 - FACT의 대표인 Kieron Sharp는 이번 판결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영국의 콘텐츠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함.
 - 또한 FACT는 앞으로도 영국 전역의 프리미어 리그, 관련 산업계, 법 집행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영국 창조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판매를 단속(clamp down)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 영국 프리미어 리그 협회의 법률 서비스 책임자 Kevin Plumb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등의 판결은 프리미어 리그 경기 콘텐츠와 다른 인기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범죄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함.
 - Kevin Plumb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불법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는데, 이번 고등법원 및 형사법원의 판결이 협회의 노력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3> 영국 레딩 법원은 2013년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를 불법으로 중계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축구 경기의 중계방송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며 이를 허락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확인한 바 있음. 이수형,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유죄판결 선고되다”, 「저작권 동향」 2013-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 참고 자료**

<https://bit.ly/2LMJJ1s>

<https://bit.ly/2NTgM1b>

<https://bit.ly/2K6cq4n>

<https://bit.ly/2LOeBhW>

<https://bit.ly/2mYGNRo>

<https://bit.ly/2LOL3lm>

영국

음악저작권 침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영국 기반의 국제 인터넷 기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회사 YouGov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불법적인 다운로드 방식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개요

- 영국 기반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회사 YouGov^{<1>}가 2018년 8월 2일 발표한 보고서 “Music Report”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음원 불법 다운로드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전체 음원 대비 불법 다운로드 음원 이용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요 내용

- YouGov는 올해 3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영국 성인 4,009명을 대상으로 음원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국 전체 국민 10명 중 1명꼴인 10%가 음악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불법 다운로드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5년 전인 2013년의 18%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임.
- 설문 조사 대상자의 22%는 향후 5년 이내에 불법 다운로드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YouGov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함.

<1> YouGov는 2000년 5월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 인터넷 기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회사로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 북미, 중동 및 아시아 태평양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응답자의 2/3에 해당하는 63%는 5년 후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음악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 음악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인정한 조사 참여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는 다른 곳에서 음악을 들을 수 없을 때 음악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1%가 음악이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독점적으로 발매될 때 실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조사대상의 36%는 음악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출처(unauthorised sources)를 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기 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응답함.
- 음악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중단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중 63%가 현재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한 명은 스트리밍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쉽고 편리하며 더 이상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또한 Spotify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최신 발매 곡부터 오래된 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용 가능한 음악 콘텐츠가 많고 검증되지 않은 출처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이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 및 증가가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이용자들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평가 및 전망

- 이번 YouGov의 조사결과는 이전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던 음악 콘텐츠 소비 행동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낮은 비용과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점차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음악을 청취한다고 답하는 것을 꺼려하는 일부 응답자들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난 3월에 불법 복제행위 추적(piracy-tracking)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MUSO에 의해 발표된 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의 불법 복제 사이트 방문 수는 약 3,000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임.

- 또한 음악 불법 복제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영국의 불법 사이트 접근 비율은 전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YouGov의 부국장인 Justin Marshall은 불법 다운로드가 여전히 음악 업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이제 터널 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의견을 밝힘.
-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저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불법 다운로드 행위의 감소와 관련한 고무적인 징후(encouraging signs)가 나타났다고 언급함.
- 많은 영국의 전문가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음악 저작권 침해가 감소되는 경향이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참고 자료

<https://bit.ly/2veh63E>

<https://bit.ly/2NO1Rpv>

<https://bit.ly/2NcsDL9>

<https://bit.ly/2LXB3Gs>

<https://bit.ly/2wLo3db>

캐나다

법원, 저작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다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캐나다 퀘벡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금 산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저작물의 가치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므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또한 추상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림.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법적 다툼에서 저작권 침해 배상금을 산정할 때,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물론 그 외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근거로 손해 배상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

배경

- 원고는 전문 프리랜서 사진작가이며 A 미디어 회사와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음 (이하 ‘이 사건 사진’). A 미디어 회사는 여러 잡지 회사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제공하고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잡지 회사는 원고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임. 원고와 A 미디어 회사는 사진을 한 장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진 한 장 당 20달러, 그리고 사진을 여러 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진 한 장 당 15달러로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캐나다 퀘벡을 기반으로 하는 잡지회사임. 2017년 3월 14일, 피고는 원고에게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A 미디어 회사의 웹사이트에 실린 ‘이 사건 사진’을 자신의 잡지에 다시 게재하는 형태로 이용함. 이 때, 피고는 원고의 성명이 아닌 A 미디어 회사의 성명을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표시함.
- 2017년 3월 16일,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850달러를 배상하라고 청구함.

사실 관계

- 피고는 새로 입사한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함. 하지만 ‘이 사건 사진’에 대해 850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고 기존 저작물 이용료의 5배인 100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함.

- 원고는 자신의 저작물이 가진 가치가 피고가 제시한 손해배상금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제안을 거절함. 2017년 7월 13일, 원고의 변호사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3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제시함.

쟁점

- 저작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

관련 규정과 판례법

- 캐나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사진’은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됨. 또한 동법 제2.2(3)조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재현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동법 3(1)조에 의거함.
- 또한 동법 34(1)조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시함.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가처분 신청과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 등을 가짐.
- 동법 35(1)조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의 배상 책임을 다룸. 이에 따르면, 침해자는 자신이 침해한 권리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이 손해액을 산정할 권한을 가짐. 하지만 동법 38.1(1)(a)에 따라, 상업적인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최소 500달러의 배상 책임을 짐. 하지만 이 금액은 20,0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함.
- 2014 Labrecque 판례에 따르면,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자체를 수익이나 사업 기회 측면에서 수량화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이미지의 무단 사용이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하기 어려움.

판결

- 먼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추상적인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고자 하였음. 해당 기준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던 시간과 원고가 피고와의 소송을 위해 지불한 변호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1> Labrecque (O Sauna) c. Trudel (Bellaza Center, GP), 2014 QCCQ 2595 (CanLII).

-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 카테고리를 제시함. 1) A 미디어 회사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20달러), 2)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한 사실, 3)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통해 얻은 수익, 4)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면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점, 5) 원고가 소송을 위해 지불한 경비가 그 카테고리임.
- 우선 저작물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과 카테고리 1) 모두 ‘이 사건 사진’의 절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저작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두 번째 쟁점인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2)에서 피고가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고 나서 즉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따라서 카테고리 3)의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됨. 그러나 카테고리 4)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이 인정됨.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함
-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5)에 대해서는, 피고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 2002년 Viel 판례를 적용하면 원고가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불한 행위는 고소권의 남용임. 법원이 보기에 원고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음. 하지만 원고는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나치게 사법적인 논쟁을 추구하였고, 따라서 카테고리 5)는 원고의 고소권 남발로 인해 야기된 경비이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음.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례는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추상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배상금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일부 저작권자들의 소송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mFYghm>

<https://bit.ly/2Mu5uTZ>

<2> Viel v. C. Entreprises Immobilières du Terroir Ltée: 2002 CanLII 41120 (QC CA) , AZ-50124437 , by. 75, 2002 CanLII 41120 (QC CA) , JE 2002-937

인도

델리 고등법원, TV 프로그램의 컨셉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김혜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시청자가 TV 퀴즈쇼 출연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퀴즈를 푸는 라이브 TV 퀴즈쇼 컨셉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도 델리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Delhi)은 2018년 8월 10일 시청자가 참여하는 컨셉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고, 유료 TV 프로그램의 컨셉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표현된 후에야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뿐 컨셉인 단계에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TV 퀴즈쇼 프로그램의 컨셉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이 판결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기초하여 TV 프로그램 컨셉은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임.

⚖ 사실관계

- Jeeto Unlimited(이하 ‘Jeeto’)는 시청자가 출연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퀴즈를 푸는 컨셉의 라이브 TV 퀴즈 쇼 프로그램임.
 - 시청자는 전화를 이용해 출연자에게 제시된 문제를 출연자와 동시에 풀 기회를 갖고, 정답을 맞히면 점수를 받게 됨.
- Jeeto 컨셉을 만든 A는 2011년 12월경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B측에게 Jeeto 컨셉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그는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A에게 컨셉 노트의 제공을 요청함.
- A는 2011년 12월 22일 B측에게 이메일로 컨셉 노트를 보내주었고 2012년 2월 23일에도 B측과의 회의에서 A는 B측이 컨셉 노트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컨셉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B측에 Jeeto 컨셉을 보여줌.
- B측이 제작하여 방송한 퀴즈쇼 Kaun Banega Crorepati(이하 ‘KBC’, ‘누가 백만장자가 될까’)도 집에서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출연자와 같은 문제를 푸는 컨셉의 퀴즈쇼임.
 - 시청자는 퀴즈쇼를 TV로 시청하다가 JioChat을 이용해 SMS나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정답을 맞힌 시청자는 각 문제에 걸린 상금을 받게 됨.

- A는 2013년에 Jeeto 컨셉에 대하여 등록번호 L-45361/2013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고, B 측이 이러한 Jeeto 컨셉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B 측은 A는 퀴즈쇼 컨셉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KBC는 Jeeto의 컨셉과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함.

관련 저작권법 규정

- 저작권법 제2조 (y)는 (1) 어문저작물, 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2) 영화, (3) 음반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work)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저작권법 제37조 내지 제39A조는 실연권(performers rights), 방송권(broadcasting rights) 등만을 인정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저작물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규정함.

델리 고등법원의 판단

- 시청자가 TV 퀴즈쇼 출연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퀴즈를 푸는 라이브 TV 퀴즈쇼 컨셉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인도 델리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Delhi)은 2018년 8월 10일 시청자가 참여하는 컨셉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해당하고, 유료 TV 프로그램의 컨셉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표현된 후에야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뿐, 컨셉인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TV 퀴즈쇼 프로그램의 컨셉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컨셉은 저작권법 제2조 (y) 또는 제37조 내지 제39A조에 규정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도 1978년 R.G.Anand Vs. M/s Delux Films 사건에서 아이디어, 테마, 주제, 플롯 등은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으로 표현되어야 비로소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그 자체인 채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집에서 퀴즈쇼를 보고 있는 시청자가 참여한다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KBC와 Jeeto의 ‘집에서 퀴즈쇼를 보고 있는 시청자가 참여하여 출연자와 함께 퀴즈를 풀고 정답에 대한 점수를 받는다’컨셉은 표준적 삽화(Scènes à faire)에 해당하여 얼마든지 유사할 수 있음.
- 설령 컨셉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Jeeto 컨셉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 시청자가 참여하는 컨셉은 A가 처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이용되어 온 것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므로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1) KBC는 ‘Fastest Finger Test’라고 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참여 시청자를 선정하는 반면에 Jeeto에서는 복권 추첨 시스템(lottery system) 방식으로 참여 시청자를 선정하고 (2) KBC는 출연자와 시청자의 게임을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사전 녹화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Jeeto는 시청자가 출연자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퀴즈를 풀게 하는 라이브 쇼로 진행되는 등 두 퀴즈쇼의 컨셉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들이 존재함.
- A는 B측이 컨셉을 이용한 것이 비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하나 A는 이미 A는 B측이 컨셉 노트에 기재된 것과 유사한 컨셉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비밀 정보 침해 주장은 할 수 없음.

 **평가**

- 이 판결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기초하여 TV 프로그램 컨셉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임.
- 컨셉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텔리 고등법원이 Jeeto 컨셉의 창작성 유무는 검토하지 않은 채 TV 프로그램 컨셉이 저작물에 해당 하더라도 Jeeto 컨셉은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음.

*** 참고 자료**

<https://bit.ly/2wojpRs>
<https://bit.ly/2BUMRoc>
<https://bit.ly/2wg11fU>

일본

법원, 일러스트 무단 전재(轉載) 사이트에 손해배상금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일러스트레이터인 원고는 자신의 일러스트를 인터넷 웹 사이트에 무단 전재(轉載)한 것을 이유로 ‘걸스 VIP 마토메’(ガールズVIPまとめ)라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쿄지방법원은 과거 실적 등을 토대로 일러스트 1장당의 사용료를 1년 3만 엔으로 산정하고, 피고에 대해 일러스트 사용료(3만 엔 × 3점 × 3년)와 그 밖의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3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이 판결에 대해서는 “무단 전재의 재판 사례를 만들어 준 것으로 모든 그림 작가의 희망이 된다”는 등 긍정적 평가가 있음.

사실 관계

- 원고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활동하는 개인인 한편, 피고는 인터넷 미디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걸스 VIP 마토메’(ガールズVIPまとめ)라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함.
- 원고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일러스트레이터이고 주로 출판사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러스트를 작성하고 있음. 원고의 일러스트는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가치는 상당히 높음.
-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일러스트를 트위터 및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게재하여 왔음.
- 피고는 2014년 7월 31일 원고의 일러스트 3점(이하 ‘이 사건 일러스트’)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일러스트를 게재한 피고의 행위가 송신가능화권(저작권법 제23조 제1항)^{<1>}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저작권법 제114조 제3항^{<2>} 등에 의거해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함.

<1> 일본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 공중송신을 할 권리를 전유한다”고 규정함.

<2> 일본 저작권법 제114조 제3항은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일러스트의 게재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임.
 - 피고는 원고가 2014년 8월 3일 무단 전재에 너그러운 입장임을 밝히는 트윗을 작성한 것을 강조하고, 2014년 8월 피고를 포함한 제3자의 일러스트 게재를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성립 자체를 부정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트윗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함. 원고는 2014년 8월경 트윗에 무단 전재에 너그러운 듯한 표현은 있지만, 해당 표현에 이어 무단 전재를 방치하면 무단 전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됨을 지적하고 무단 전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의 의견을 표명하였음을 지적함.
- 둘째, 원고의 손해액임.
 - 원고는 ①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이미지는 1면당 2만 엔, 컬러 속표지는 1면당 4만 엔의 원고료로 제작 의뢰를 받는 것, ② 책 표지용으로 제작한 컬러 일러스트의 원고료가 3만 엔인 것, ③ 연하장용으로 제작한 컬러 일러스트의 원고료가 2만 4000엔인 것을 토대로 이 사건 일러스트의 사용료는 1년 기준 10만 엔 이상이 적당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2014년 7월 31일부터 약 2년 11개월간 일러스트를 게재하였으나, 원고가 1년 단위로 사용료를 설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10만 엔 × 3점 × 3년분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90만 엔을 사용료로 주장함.
 - 피고는 트위터 서비스 이용규약상 트위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트윗 자체를 다른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이 인정됨을 언급하고, 그렇다면 트위터에 이 사건 일러스트를 게재한 원고는 트윗 자체를 다른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이에 더해 피고는 당시 충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일러스트 자체를 게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트윗 자체를 게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적법하게 게재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 점을 손해액 인정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첫 번째 쟁점
 - 2014년 8월경 원고의 트윗은 원고가 본래 무단 전재에 너그러운 입장이지만, 무단 전재를 방치하면 무단 전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무단 전재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트윗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일러스트의 게재를 허락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일러스트의 게재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두 번째 쟁점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일러스트를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였고, 나아가 피고에게는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이 인정됨.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일러스트의 저작권 행사에 관해 받아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다만 법원은 원고의 작품 활동 및 원고료 실적, 이 사건 일러스트의 내용, 이 사건 사이트는 인터넷 미디어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가 운영하고 그 열람 수에 따라 피고가 수익을 얻는다는 것,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일러스트의 사용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은 1년당 3만 엔이 적당하다고 판단함.
-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일러스트의 사용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27만 엔(1년당 3만 엔 × 3점 × 3년분)으로 산정하고, 이에 더해 변호사 비용으로 3만 엔을 인정함.
- 다른 한편 피고는 트위터 서비스 이용규약상 트윗 자체를 다른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고 행위가 적법하게 될 여지는 없고 이 사건 사이트의 성질 등에 비추어도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반응**

-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권리 위에 잠들어있던 저작권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는 반응임.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훌륭한 판결’, ‘모든 그림 작가의 희망이 된다’ 등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음.

*** 참고 자료**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5106197/>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855/087855_hanrei.pdf

중국

Toutiaohao(头条号), 저작권 침해 계정을 영구 폐쇄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중국의 뉴스 앱 Toutiao(今日头条) 산하의 개인 미디어 플랫폼 ‘Toutiaohao(头条号)’는 2018년 7월에 회사 내부 감사나 이용자로부터의 통보를 근거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한 이용자 계정 2475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함. Toutiaohao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그 침해 정도가 경미한 2173 계정에 대해서는 감점, 발언 금지 등의 조치를, 복수의 저작권 침해 등 악질성이 높은 302계정에 대해서는 영구 폐쇄 조치를 취함. 이번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실시된 ‘검망 2018’ 정책의 일환으로서, 플랫폼 정리와 인터넷 공간의 정화를 통한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배경

- 중국의 국가판권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公安부는 2018년 7월 16일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 단속 활동 ‘검망 2018’(剑网2018)의 개시를 선언함.
 - 특별 단속 활동 ‘검망’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음.
- ‘검망 2018’은 2018년 7월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상의 무단 전재^{<1>}·짧은 동영상^{<2>}·애니메이션 등 3가지 중점 영역^{<3>}에 대한 특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1> 최근 중국에서는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웨이보와 같은 중국 주요 SNS 상의 무단 전제가 심각화하고 있음. 이 때문에 ‘검망 2018’에서는 2017년에 이어 인터넷상의 무단 전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함.

<2> 현재 짧은 동영상이 짧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동영상의 제작 및 전송 등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가 심각화하고 있음. 이 때문에 ‘검망 2018’에서는 더우인(抖音)이나 콰이쇼우(快手)와 같은 짧은 동영상 관련 대표적 플랫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임.

<3> 3가지 중점 영역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집중 단속, 인터넷 생방송·지식공유·오디오북 플랫폼에 대한 집중 단속, ‘검망’의 성과 공고화를 말함.

- 이와 관련하여 국가판권국은 인터넷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저작권에 관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등 저작권 보호 대책 강화를 요청함.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공통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저작권 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함.
- 중국 인터넷 뉴스 ‘Toutiao’(今日头条) 산하의 개인 미디어 플랫폼 ‘Toutiaohao’(头条号)는 국가판권국의 요청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대책을 강화함.

‘Toutiaohao’의 대응

- Toutiaohao는 2018년 7월에 회사 내부 감사나 이용자로부터의 통보를 근거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 계정 2475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함.
 -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그 침해 정도가 경미한 2173개 계정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발언 금지 등의 조치를, 복수의 저작권 침해 등 악질성이 높고 그 침해 정도가 중한 302개 계정에 대해서는 영구 폐쇄 조치를 함.
- 한편 Toutiaohao는 기술을 활용하고 규모화와 저비용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저작권 보호 및 권리 침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예컨대, 디지털 판권과 관련하여 중국 최초로 동영상 판권 보호 시스템인 ‘링스’(Lingshi)를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플랫폼 상에 업로드 된 내용에 대해 ‘내용 지문’으로 불리는 일종의 증명서를 부여하고, 판권을 가진 측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측을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나아가 제3자 기구와 연계하여 원작의 문장에 대해 보유 권리 확인과 시간 인증을 하고, 작자에 대해 원작자로서의 판권의 전자판 등기 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Toutiaohao는 정부에 권리 침해 관련 통보를 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하고 있음.
 - 플랫폼 측은 고발된 상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최단 기간 내에 확인과 처리를 함.
- 이 밖에 Toutiaohao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개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음.
 - 악질성 높은 중대한 저작권 침해 상황이 인정된 계정은 플랫폼에 의해 즉각 폐쇄되고 영구히 블록 아웃되며, 해당 ID로는 영원히 재등록 할 수 없음.

평가 및 동향

- 이번 조치는 ‘검망 2018’ 정책의 특별 행동으로서, 플랫폼 정리와 인터넷 공간의 정화를 통한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Toutiaohao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계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원작자의 권익을 지키고 건전한 콘텐츠 제작을 도모하기 위해 힘을 계획이라고 밝힘.

*** 참고 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382504.html>

<http://www.afpbb.com/articles/-/3185662?page=2>